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6도9436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성환 외 1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6. 5. 27. 선고 2025노1937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88조 제3항의 국외이송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유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는 행위자가 국외 이송의 목적을 가지고 기망 또는 유혹 등의 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때 기수가 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 유인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위자 또는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지배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보인 행위의 양태와 종류,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및 그 전후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가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보인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위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유인된 사람'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사실

적 지배 아래로 옮겨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4)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자가 유인행위의 기수에 이른 후 그 유인된 사람을 실제로 국외에 이송한 경우,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의 국외이송유인죄와 같은 항 후단의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들은 서로 구성요건과 행위의 양태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 또는 유혹에 넘어가 하자 있는 의사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점, 피고인 2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에 데리고 와 출국장까지 동행하였던 점, 피고인 1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를 만나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건네주면서 출국하도록 유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 인천국제공항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을 당시 종전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국외이송유인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유인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제공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상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이들 각 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 이유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캄보디아 출국 당일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피고인 2에 의해 갑자기 국내 생활근거지에서 벗어나 금천구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게 된 점, 그 일련의 과정이 12시간 이내에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이동 경로 대부분을 동행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며 캄보디아로 출국하지 않으면 즉시 채무를 변제받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변제 독촉을 하겠다고 압박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고, 출국 직전까지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캄보디아 출국 당일 피고인들의 지속적 감시·통제·동행 아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할 당시 이미 종전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들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겨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국외이송유인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유인된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한 이상 국외이송유인죄와 별개로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가 각각 성립하고 이들 범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성립, 국외이송유인죄와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에 죄형균형 원칙 위반, 책임주의 원칙 위반, 방어권 침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

주 심 대법관 박영재 _____

대법관 김성수 _____